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89 발의연월일: 2021. 11. 2.

발 의 자:허종식・김정호・유동수

어기구 · 이성만 · 김성주

김민기 • 이용선 • 김교흥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 현장에서는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송 지연 및 전원 발생은 골든 타임 내 신속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는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송체계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송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 역의 응급의료 자원 상황을 기반으로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의 협 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효과적인 작동이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 계획에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안 제13조의3제2항 신 설), 시·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개선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13조의6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각 지역에서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음(안 제13조의6제3항 신설).

또한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환자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송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별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 이송병원 선정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응급환자 발생, 응급의료제공 등 지역 응급의료 현황
-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지역응급의 료 이송체계 마련
-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4. 인력·조직 등 응급의료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 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실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6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

-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 7.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 현황 및 개선 필요 사항
 제13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
 ·도위원회"를 "시·도위원회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으로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시·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다만,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중증도, 전반적인 환자상태, 제 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 제49조제1항 본문 중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처치 내용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
	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지역
	<u>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의</u>
	<u>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u>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응급의료제
	공 등 지역 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지
	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 주요 사
	업 추진 실적 및 계획
	4. 인력·조직 등 응급의료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
	<u>축</u>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본
	계획의 실행 및 응급의료 발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u>하는 사항</u>
<u>②</u> ~ <u>④</u> (생 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생략)

- ② 시 · 도위원회는 해당 시 · | 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2. ~ 4.(생 략)

<신 설>

5. (생략) <신 설>

③ (생략)

항까지와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 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 송체계 개선
-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 7.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질 관 리 현황 및 개선 필요 사항 8.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시・ 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 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 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
- 건의료에 관<u>한 법률」 제22</u>조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 례로 정한다.
-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저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②(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

<u>⑤</u> 시·노위원회 및 시·노
응급의료지원단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
환자의 중증도, 전반적인 환자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
하여야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처치내용 등

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	
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	
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